

『財產稅의 價格效果와 歸着』：應答

盧基星

*

공정거래위원회의 崔採宇 사무관은 필자의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었다.¹⁾

崔 사무관의 논평은 크게 세가지 점으로 요약되는데: ① 單獨住宅과 아파트간에는 土地와 住宅의 구성비가 다르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분석할 수도 있고; ②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대료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임대료 가격축 선상에서 불연속점이 존재하고, 그러한 기대가 가장 높은 임대보증금의 설정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財產稅가 강화되더라도 임대료에는 아무 변동이 없을 수도 있으며; ③ 財產稅의 歸着과 관

련하여 임대자가 “재산세 공과금을 임차자 가 전액 부담한다”는 계약조항을 첨가함으로써 임차자에게 財產稅 增大를 전액 전가한다는 것이다.

먼저 單獨住宅과 아파트의 분리문제는 필자의 논문이 일반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單獨住宅과 아파트의 경우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변형으로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필자가 설정한 모형에서는 주택의 특성이 수요함수에 반영될 것이므로 임대료 변동의 크기가 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논의한 財產稅는 土地 및 建物에 대한 보유과세로서 우리나라 설정법상의 財產稅보다 광의의 것으로서 綜合土地稅와 財產稅 등 土地 및 建物에 대한 보유과세를 모두 포함한다.

둘째, 財產稅가 강화되더라도 최초의 높은 임대료 설정으로 인하여 임대료의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사정이 불변일 때,

筆者：本院 研究委員

* 필자는 公正去來委員會 崔採宇 사무관의 논평에 깊은 감사 to 표한다.

1) 盧基星, 「財產稅의 價格效果와 歸着」, 『韓國開發研究』, 1993년 겨울호.

崔採宇, 「論評：財產稅의 價格效果와 歸着」, 『韓國開發研究』, 1994년 봄호.

財產稅가 강화되면 임대료의 상승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데, 현재 유효한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임대료 인상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세의 경우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아직 유효할 때, 財產稅가 강화되더라도 임대료의 즉각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임대료의 인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재계약시에는 재산세의 강화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崔 사무관이 지적한 임차자로의 재산세 전액 전가는 전형적인 조세전 가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住居需要가 價格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임차자가 재산세의 부담을 전부 진다. 이러한 점에서 超短期的으로는 住居需要가 價格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일 것이므로 財產稅의 완전전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다수의 임대자가 존재하는 한 財產稅의 부담은 주거수요가

장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반응할 것이므로 임대자에게도 일부 돌아간다. 이때 주택의 위치, 크기, 주변의 교통편리시설 존재 여부 등 임대자의 협상력이 클수록 財產稅의 임차자에게로의 전가 정도는 클 것이다. 따라서 財產稅의 전가 정도는 실증분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기존의 실증 연구결과에 의하면 住居需要의 價格彈力性의 절대치가 최고 0.76으로 추정되어 임대자도 財產稅의 일부를 부담한다.²⁾

▷ 參 考 文 獻 ◇

盧基星, 「財產稅의 價格效果와 歸着」, 『韓國開發研究』, 1993년 겨울호.

崔採宇, 「論評 : 財產稅의 價格效果와 歸着」, 『韓國開發研究』, 1994년 봄호.

2) 盧基星(1993), p. 147 참조.